



## 聯合商標의 類似性判斷

〈日本東京高法 1980年 6月 18日 判決, 1980年(行계) 第21號〉

1. 原告: 소니(株)
2. 被告: 特許廳長官
3. 判決主文

特許廳의 1971年 審判 第754號 事件에 대한 1979年 12月 5日의 審決을 取消한다.

### 4. 事件概要

X인 소니는 1969年 1月 14日「SONY NYLINE」이라는 유립文字의 左橫書로 된 商標에 대해 第24類의 玩具, 人形, 娛樂用品, 運動具, 釣具, 樂器, 演奏補助品, 蓄音機(電氣蓄音機 除外), 레코드, 이들 部品 및 附屬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登錄 第511,322號 商標外 41件의 登錄商標와 聯合商標로서 商標登錄을 出願한 바 1970年 11월 5日 拒絕査定되었으므로 1971年 1월 9日에 審判을 請求하였다.

그러나 1979年 12월 5일에 이 審判의 청구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審決하여 그 審決騰本이 1980年 1월 9日 X에 送達됨으로써 이를 不服한 拒絕不服審決取消을 청구하는 本訴에 이르렀다.

本件 審決理由의 要旨인즉 本願商標와 聯合하는 商標로서 揭記한 各登錄商標는 서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어느것이든 單純한 造語로서의 「소니」의 呼稱이 생긴다.

그러나 兩者에서 생기는 「소니라인」과 「소니」의 兩呼稱은 실사 「소니」의 部分이 같다 하더라도 全體로서는 「라인」의 音有無에 의해 語韻<sup>■</sup>가 顯著히 달라지게 되어 充分히

聽別하게 할 수 있으므로 兩商標는 호칭에서 類似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觀念上으로 比較할 것도 없다.

또한 兩者의 綴字 및 書體가 서로 다르므로 外觀上 混同할 念慮도 없다. 따라서 非類似商標이므로 本願商標는 聯合商標의 登錄을 받을 수가 없다고 審決한 것이다.

### 5. 判決要旨

『本願商標에서 「소니」의 호칭이 생기느냐의 與否를 考察컨대 辯論의 全趣旨에 의하면 本願商標中の 「SONY」의 文字部分은 그 優秀한 性質이 있는 트랜지스터라디오, 테이프 레코드 등이므로 本原商標出願前부터 日本國內는 물론 各國에도 널리 알려진 소니(株)의 製品에 使用되고 있는 著名商標로 表示되고 있음이 明白하다.

따라서 本願商標의 指定商品去來者, 需要者는 本願 商標에 接할 경우 一見하여 곧 「SONY」의 문자부분에 소니(株) 혹은 그 系列에 속하는 자에 關係되는 商品이라는 강한 印象을 받아 이에 注視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LINE」의 문자부분은 系列, 系등을 가리키는 格別하고 限定的인 意味를 갖지 않는 諸般分野에서 普通로 사용되는 用語로써 疎薄한 印象을 주는 데 그친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本願商標에서 「소니」의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다. Y는 같은 書體, 같은 크기, 같은 間

隔으로 連書하여 되는 本願商標는 전체로써 「소니라인」이라고 단숨에 읽히게 되므로 本願商標에서 一連으로 「소니라인」의 호칭만이 생긴다고 主張하게 된다.

分明히 本願商標에서 일련으로 「소니라인」의 호칭이 생긴다는 것도 是認하게 되나 그렇다고 前述과 같은 特段의 去來實情下에서 本願商標가 소니의 호칭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이상 本願商標에서 일련으로 「소니라인」의 호칭만이 생긴다 하여 이를 前提로 本願商標와 各登錄商標가 非類似하다고 한 審決은 餘他の 點에 대해 判斷할 것 없이 商標類否判斷을 그르친 違法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駁할 길이 없다.』고 審示하기에 이르렀다.

### 6. 解説

本判決로서 SONYLINE과 SONY가 聯合商標登錄을 받기 위한 유사성의 有無에 대하여 審決과 판결이 전혀 正反對의 판단을 한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實務的으로 聯合商標의 聯合要件으로서 類否判斷이 聯合의 聯合이라는 이른바 連鎖方式으로 판단하는 이상 앞으로든 本 審決의 立場이 계속하게 된다. 本訴 審示로써 聯合商標의 유사판단에 대해서 再檢討의 機會가 되리라는 見解들이 적지 않다.